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공인회계사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흥영관리

2021/ 2/ 24 - 통권 150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지용 점류 주간지

CEO 에서이 - 이미익원광

'반독점'거스르는 나라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경영관리임직원 깨경컨설팅 제안

박윤종 회계사 :

통학개미들의 주식투자 열풍과 재무제표 외부회계 감 사보고서의 관련성 10가지

CFO·회계실무자·쪼세전문가 정보

-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 증실시
- 회계개혁 시장만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 신 요약 사례 공개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 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임차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비 용 중 장부가와 처분가액 차액은 필요경비에 반명 가능함 (p.12)

<동학개미의 상장주식 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등>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기업규모	상장여부	대주주 여부	적용세율(지방세 10% 추가)	
		일반소액주주(장내)	비과세(과세규정 없음)	
		소액주주 장외거래	10%	
중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	대주주 3억 초괴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 초과액부터 25% 1년 미만 보유 30%	
열거)		소액주주	10%	
	비상장	대주주	이익 3억까지 20%,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장내 비과세, 장외 10%	
중소기업 외 (세법상 열거규정된	상장	대주주	3억까지 20%,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회사이외)	비상장	소액주주	20%	
		대주주	3억까지 20%,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해외주식	모두해당	관계없음	중소기업 10%, 기타는 20%	

대주주 여부 판단 (다음 조건 해당자)

일반상장(코스피):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코넥스상장: 4% 이상 또는 10억원

증권거래세: 코스피 주식: 0.08%, 코스닥 주식 0.23%, 코넥스 주식 0.1%

비상장과 장외: 0.43%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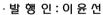
안세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중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07 호 / 주가 8호

2021 2 24 (수)



작 : ㈜ 안건쪼세정보 · 대표전학: 02) 829-7575

FAX: 02) 718-8565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人: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10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동학개미의 상장주식 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등	田川
긴 급 시 사 해 설	동학개미들의 주식투자 열풍과 재무제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와의 관련성 10가지	2
C E O 에 세 이	'반독점'거스르는 나라	3
세 무ㆍ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 기계구입 계약금 세금계산서 계정 - 합작법인 - 공동도급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에 원천징수 해야 함	7
매일절세재무요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9 10
직장인Survival	직장에서 자기계발이 중요한 5가지 이유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소득-354, 2020.05.2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법령소득-462, 2020.06.12)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간주임대료·환급가산금 이자율 1.8→1.2%로 인하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임차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중 장부가와 처 분가액 차액은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함	13
세 무 정 보	-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15 22
회 계 정 보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 내용을 안내합니다. 	35 37 43 4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4

전 직 원 코

동학개미들의 주식투자 열풍과 재무제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와의 관련성 10가지



박유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1. 외부회계감사는 회사 정보를 모르는 소액투자자(약 1천만명 이상의 <u>주</u>식 어<u>린</u>이, 100조 이상 투자중이라 함) 보호가 주 목적임
- 2. 대부분 소액투자자(주린이)가 감사보고서를 실제로 직접 검색하지는 않더라도(전자공 시 접속자 수 대폭 증가 없었다 함), 각 증권사등이 요약제시한 재무정보 내용은 감사받 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므로, 간접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음.
- 3. 현재의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므로, 현재의 재무상태·경영성적과는 직접적 상관관계 적음
- 4. 그러나 오랜기간 지속된 회사는, 실적의 계속성으로 인해, 주가는 재무상태와 손익실적에 연동됨(기업가치는 3년 평균 순이익의 10~30배 내외)
- 5. 특히 외부감사의견이 적정 아닌(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나 계속성 불확실 특기사항이 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적정 감사보고회사는 투자 신중해야 함.
- 6. 따라서, 투자종목을 선정하면 최소한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에 들어가 해당 회사를 일별해야 함.(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상장사의 가장 최근의 전체적 기본정보임)
- 7. 전자공시(dart)에서 감사의견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뿐 아니라, 현금흐름표·자본 변동표·주석사항(특수관계인거래, 부외부채, 우발채무 등) 등도 모두 일별검색할 가치 가 충분히 있음.
- 8. 외부감사인의 행정책임 : 부실감사인 경우,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등의 감리와 징계강화
- 9. 외부감사인의 형사책임: 부실감사시 징역 5년 내지 10년, 과태료 5000만원, 벌금은 투자자 손실의 2~5배
- 10.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 이해관계자 손해배상 책임(회사와 연대배상), 민사책임제척 기간이 3년 → 8년으로 연장됨.

경영진코너

'반독점'거스르는 나라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전세계 빅테크기업의 독주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소위는 6일(현지시각) 1년4개월간의 독점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GAFA의 독점력을 검증한 결과와 함께 "반독점법을 개정해 이들 플랫폼기업을 제어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미 의회가 실제 반독점법 개정까지 완료할 경우,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레짐(규범체계)이 시작된다. 일찌감치 반독점규제에 나선 유럽에 이어 미 하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한국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면 법위반액의 두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하고, 계약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에 난리일까.

'독점자본주의' 병폐가 치명적인 시장 실패를 낳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선진화 되면서 빈부격차가 더해져 2000년대의 20:80에서 2010년대에는 1:99로 벌어졌다.

자본주의 4.0시대(2010~)를 향해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인간 노동의 가치를 거의 제로(0)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GAFA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반면, 많은 기업들은 수익모델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만 남는 봉건주의와 비슷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 바 '플랫폼봉건자본주의'를 전 세계가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이판에 엉뚱한 풍경도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코나일렉트릭의 잇단 화재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내수시장 점유율 70%를 누리는 '독점적기업'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관련규정이 일몰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동반선장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바 있다.

중고차는 지난해에만 총 224만대가 거래됐다. 신차가 178만대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차시장의 1.3배 수준이다. 중고차 1대당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대략 연간 22조원의 규모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SK엔카를 잃었던 SK그룹도 뛰어들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000여개 중소업체로 이뤄진 시장에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 빅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중소업체들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중고차시장에서 종사하는 5,964업체의 3만8096명의 일자리도 '빅플레이어' 경영효율 (?)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를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기묘한 정책'이 아닐수없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에너지 절대빈국인 한국에서 '우격다짐'탈원전에 따르는 감사원감사 논란, 23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집값의 유래가 없는 폭등으로 3040세대의 좌절과불안, 게다가 독점적대기업의 중고차시장진출 등, 모든게 서로 엉켜 붙어있다. 세월이 유수간기만 바람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5일(월)	2월 16일(화)	2월 17일(수)	2월 18일(목)
		달		러	(USD)	1110.10	1103.10	1099.70	1107.70
일		본		엔	(JPY)	1057. 49	1047.13	1035.45	1046.23
캐	나	다	달	러	(CAD)	874.96	872.98	865.36	872.03
홍	콩		달	러	(HKD)	143.18	142. 29	141.85	142.88
위		안		화	(CNH)	172.78	172.10	171. 58	172.10
유		로		화	(EUR)	1345.77	1337. 95	1329.54	1333. 9
호	주		달	러	(AUD)	862.05	858.43	850. 51	858.74
싱	가	폴	달	러	(SGD)	837.08	833.94	827.53	833.83
말	레 이	시 아	- 링 기	트	(MYR)	274.61	273.42	272.88	274.22

번인세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법인사업장 내 기업부설 연구소가 별도 설치 및 유영중이며 국책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국책사업관련 진행 건도 법인세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 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 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구인 계약금 세금계산서 계정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잔금은 기계장치 의 인도시점인 3월에 지급,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혹시 선급금 계정으로 잡을시 감가상각.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일반 매입으로 넣어 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구입하면서 계약금 지급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반영하였다가 해 당 자산이 완성되는 시점에 자산(기계장치)으로 대체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속기업의 영업권 평가

IFRS 회계 적용 기업입니다.

종속기업 주식 취득하고 PPA보고서를 통해 발생된 영업권에 대하여

- 1. 매결산기 마다 손상평가를 해야 하는지?
- 2.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인지?

무형자사을 인식한 이후의 회계정책은 원기모형과 재평가모형 중에서 회사가 선택적용하는 것이며, 재평 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기마다 하는 것이 타당합 니다.(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72~문단87)

 $2021 \cdot 02 \cdot 24$ www.eAnSe.com 5 초 Ы

보 자 코

합작법인

의 제상되고 교 에서 지급 · 계산되고 교 이와 관련된 회계 · 세무 검토사 %

지사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합작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급나의 의비용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귀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도급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 수행하고 외국한작법인의 임원를 닷사 직원이 하게 되었는데, 해당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이 당사

기사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한작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급여를 기사가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 기사

공동도급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

A사와 B사는 동일프로젝트를 공동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A사는 대표사로 B사의 인건비까지 발주처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인건비를 B사 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A사는 발주처로부터 B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금을 수령시 계산서(비과세)를 발행하 고 있습니다. A사가 B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할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일년)

공동도급의 인건비는 기타비용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B사가 계산서 를 발행치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함

2양)

공동도급의 인건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A사가 B사의 인건비를 수령할 때 발 주처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B사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함.

A사가 공동도급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금 수령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동도급 참여자인 B에게 인건비 지급시 B로부터 계산서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경리 인코 너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 해야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 되는 등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을 정하여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시 키고 과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배당소득 지급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특정시점으로 지급을 의제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다음연도 2월~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배당을 결의하는데, 여러 이유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한 법인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배당 결의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지급의제 시기임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결산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이익에 대한 소득처분(배당)결의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한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득처분(배당)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않은 경우는 그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세법상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배당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상법에서도 배당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지급의제시점을 두어 세법상의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 지급이제시기(결이일부터 3개월)에 원천장수 이무 성립함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후,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남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성립된다.

따라서 2021년 2월(또는 3월)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5월(또는 6월)에 원천 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인 6월10일(또는 7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추후 임시주총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고, 정기주 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3개월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역시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제과-277, 2005,12,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주주는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개인주주(외국인 개인주주 포함)에게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의일로 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소득세법이나 또는 해당 외국인 거주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는 지급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통칙 98-137-1[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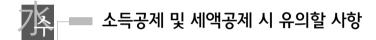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이하	24%	
8800~1.5억원 이하	35%	(좌동)
1.5~3억원 이하	38%	
 3~5억원이하	40%	
5~10억원 이하	(0.7)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42%	10억원 초과부터 45%

冷

----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조정

고	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변화없음)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7 HI O	202013	2021 =
	2020년	2021년	보유기선	공제율	2020년	2021년
60~65세 미만	10%	20%	5~10년 미만	20%	70%	80%
65~70세 미만	20%	30%	10~15년 미만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함.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는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안됨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안됨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됨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됨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안됨

개정된 ISA 기준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소득증빙 불필요)
자산운용범위	기존 금융상품(예적금, 펀드)에 상장주식 추가
계약기간	3년 이상 자율, 만기 전 이익금 외원금 중도 인출 가능
납입한도 이월	연간 2000만원으로 전과 동일. 미납분 이월 가능해 최대 1억(5년) 가능



직장에서 자기계발이 중요한 5가지 이유

1) 늦률

전문 개발을 통해 직원이 동료, 고객 및 커뮤니티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이 경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관리 하고 영향을 미치고 멘토릿 할 수있는 새로운 직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합니다

2) 일관성

체계적인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일관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 할수 있으며 직원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인력 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 정보이 업데이트

교육 및 개발은 지식이 적절하고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됩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최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약점 해결

직원 중 최고조차도 자신의 직장 기술에있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약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직원은 업무의 모든 요소에서보다 다재다 능하고 숙련 될 수 있습니다.

5) 자신

교육 및 개발은 직원의 역할 내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느끼도록 도울 수있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도움이됩니다.

위 5가지 이유들은 회사의 CEO 또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직장인 개인의 관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 직장인자기계발은 지식과 기술의 유지 및 업데이트라는 관점도 좋지만... 나아가 개인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임차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중 장부가와 처분가액 차액은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 함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 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 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법령소득-462, 2020.06.12

▮질 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을 원상회복 하기 위하여 철거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의 장부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 능한지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 67조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법인-3529, 2020.05.26

▮질 의

•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 A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수하 여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함
- 질의법인과 A법인은 골프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있 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하고 A법인의 자 본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공사를 진행할 예정 이
 - 현재 골프장 및 개발사업권은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계약을 질의법인 명의로 체격하고 있으나
 - 해당 계약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A법인에게 있으므로 A법인이 자 금을 지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추후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A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미리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으며
 - 매매형태는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 프장 전체의 영업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진행 될 예정임

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 도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 ·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 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 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소득-354, 2020.05.25

▮질 의

- 신청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00억원을 출자한 주주로서
- -1기부터 14기(2019년)까지 신청인은 해당법인으로부터 운영배당금 470백만원, 부동산 매각차익배당금 455백만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 -2019년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금 897백만원을 지급받음
-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운영배당금 결의시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였음

질의

 이익초과배당에 따라 발생한 투자원금에 미달
 하는 잔여재산분배금 차액을 배당소득에서 차 감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 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 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자본거래-2350, 2020.06.10

▮질 의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19.1.1. ~ '24.12.31.) 만료일까지 재단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와 공 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 청·국세청 등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경 오
-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3)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및 아래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3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 등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간주임대료·환급가산금 이자율 1.8→1.2%로 위하

임대소득 환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와 국세·관세 환 급기산금의 이자율이 하향주정됐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 가 돌려줄 때 덧붙여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돈이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전세금 등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중이지만큼 소득신고(간주임대로)를 해야 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16%까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자율의 경우 12%로 책정됐다

시행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이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 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체 사전심사 더 빨라진다… 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전담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신속 정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 액공제 사전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지구별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공제규모는 2至3000억원 정도로 약 3만개 중소기 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세금혜택이 더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홈택 스 간이계산기 제공하며,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정부가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다.

기술투자 시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141개 시설에서 158개 시설로 확대하다

추가된 대상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 전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 니지만, 정부는 업종 특성상 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 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연구·인력개발 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 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포함됐다.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이 보유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운용하는 차량(자기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선박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시설은 총 17개로 시스템 반도체, 탄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분야가 포함됐다.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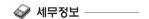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2021. 2

- □ 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1.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8%*
 - * 연도별 이자율(%) : ('16) 1.8 ('17) 1.6 ('18) 1.8 ('19) 2.1 ('20) 1.8
-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하: 연 1.2%
 -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 한국은행):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 (적용시기) ①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간주임대료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 * (개요) 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저·중 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 (현황)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됨
 - (세제)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양도시 16년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 시행령(조특령§ 115) 개정내용 〉

- ◇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거래 대금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
- → 구체적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 (주식)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 목 제외
 - * A주식의 회전율 = 1일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된 A주식의 수량 / A주식의 총 수
- (파생상품)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 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 제외
- (적용시기) '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 법(조특법§ 24) 개정내용 〉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적용
- → 구체적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
- (개 정)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

분야

주요 추가 시설

반도체

- ▶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 · 제조 시설
- ▶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탄 소 저 감

- ▶ 이산화탄소 광물화 · 화학적 변환 등을 통한 연료 · 화학물 등 생산 시설
- ▶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ㆍ저장 시설
- ▶ 배터리 재사용 ㆍ 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 ▶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ㆍ 제조 시설
-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ㆍ시스템 설계ㆍ제조 시설
- ▶수소 가스터빈 설계 · 제조 시설

신재생 에너지

-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제조 및 대면적화 시설
- ▶ 풍력발전 블레이드 설계 시조 시설

의 료 바이오

-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제조 시설
- ▶ 식물성단백질 분리 ㆍ 분획 ㆍ 정제 및 구조화 시설
-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ㆍ제조 시설
- ▶ 고온 ` 고압 식품 가공처리 시설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Ⅲ.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

〈 시행령(§ 17) 개정내용 〉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확대. 사업주 요건* 폐지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 직종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 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
- (개 정)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 직 추가

○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시행령(§ 89) 개정내용 〉

-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 ㅇ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 종가
-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할증 적용

구 분	개 정 안
□ 대량매매 등 거 래방법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예)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대량매매、바스켓매매
② 경영권 이전수 반 거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

〈 시행령(§ 109②) 개정내용 〉

-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①**상품중개업, **②**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③**건설업, **④**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추가
- *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인 B2B 업종은 적용 배제
- → 다만, 위 ❸, 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개*)을 가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
 - * 그 밖의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국세청장 고시(위임)로 추가 지정
 - (건설업)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업, 복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규정

〈 시행령(§ 24) 개정내용 〉

-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2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 *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은 기계장치 등 일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가능
- ②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 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 시행령(§ 16) 개정내용 〉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
 * 연구원 →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 국외 연구개발 경험 요건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Ⅱ 학문분야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제도와 동일
2 국외 연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일 것 ○ (재직증명서 제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 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법 시행규칙

-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상향 입법
-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 중인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 ▶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 ▶ 국제무역선 승무원
 -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 ※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0.12.17)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 *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

참 고

Q&A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는?

-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함
- 그러나,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됨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45.3%, 5조원 이상 68.9%, 1조원 이상 91.0%)

〈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시가총액별 거래현황(코스피) 〉

구 분		1조원	중)1)			
	10조원 이상	5~10조원	1~5조원	계	미만	합계
시장조성 종목수	17개	16개	74개	107개	552개	659개
시장조성거래 비중	45.3%	23.6%	22.1%	91.0%	9.0%	100%

- * 자료출처 :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20.12.21. 보도자료)
- □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 등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지속적 으로 지원하되,
- 시장조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임

주택 중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 국세청, 20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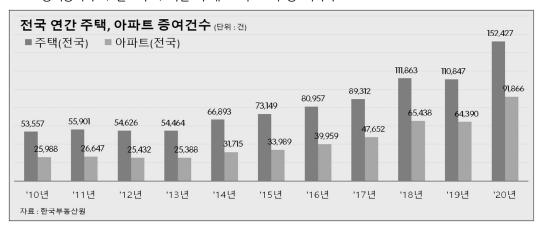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 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 (검증 대상)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하여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 자 1.176명.
-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 명.
-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 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특히,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진 배경

- 주택 증여는 '14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년 역대 가장 많은 15만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 * 주택증여건수: ('12) 5.5만건 ('14) 6.7만건 ('16) 8.1만건 ('18) 11.2만건 ('20) 15.2만건
- 특히, '20년은 다른 해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증여가 급

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 '20년 주택증여건수: (1월~6월 소계) 6만건, (7월~12월 소계) 9.2만건
- 최근 주택 증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1.28.)에서는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주택시장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과세정보*를 분석하여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 * 증여등기자료, 신고자료,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기타자료



2 기 그간의 추진 성과

-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주택 증여 등기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무신고자 등에 대해 과세 결정*을 하고.
 - * 주택 증여 무신고자 과세결정: ('17년) 3.7천건, ('18년) 4.1천건, ('19년) 3.9천건
 - 주택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 (재차증여 합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이내의 다른 재산의 증여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
- 또한,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 ㅇ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빈틈없이 추적하고

있으며.

- 주택 증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만기 상환시까지 상환내용을 매년 정기적 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 검증 또는 부채사후관리 결과,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기 재차증여 합산 신고를 누락하여 증여세 탈루

- ◈ 자녀가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에 父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하지 않은 사실 확인
-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증여세 ○억원 추 가 납부

사례 ② |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

- ◈ 자녀가 父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父의 금융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채무 상환 내역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 증여받은 이후에도 금융채무와 관련된 이자 및 원금을 父가 계속 상환한 사실 확인
- 자녀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세 탈루
-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 ③ 지수택 임대보증금을 대리 상환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

- ◈ 30대 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치인의 보증금 ○억원을 승계하였다고 신고하여 이후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 증여 이후 임대차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남편이 대리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 수정신고 안내 후 증여세 ○억원 추가 납부

3 기 주택 증여 관련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 국세청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합니다.

-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자료를 분석하여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신고 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한 혐의 유형을 추가로 발굴하고,
- 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변칙증여 혐 의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주택 증여 시점 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당초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이후 자력 없이 채무를 상환한 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가. 재차증여 합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 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사례 ① 이파트 증여 신고 시 과거 주식 증여재산 합산 신고 누락

- ◈ 자녀가 父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00주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 母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父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
- ※ 재차증여 합산 시 동일인을 판단할 때 父와 母는 동일인으로 봄

나.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과소·무신고 혐의자 531명

● 아파트 등을 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공시가격으로 과 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자

사례 ② | 유사매매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증여 과소신고

- ◆ 자녀가 母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 증여재산은 시가(時價) 평가가 원칙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여
-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
- ※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가 가능하나,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해야 함(상증령 § 49④)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범위: ① 동일한 단지, ② 전용면적 $\pm 5\%$ 이내, ③ 공시가격 $\pm 5\%$ 이 내

다.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 주택 증여자와 그 배우자가 증여주택을 매매 등으로 당초 취득할 때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자
 -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 취득부터 증여까지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자금 누락 혐의 시 동시조사 선정

사례 ③ 대출누락 등 법인자금 유출을 통해 주택 등 편법 취득

-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父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으나。
 - 父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지금을 유출하여 당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대형마트 법인세 통합조사 및 父의 자금출처 조사 동시 선정)

라. 주택 수증 이후 채무면제 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30명

-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고 자가(自家) 거주하 거나.
- 주택 부담부 증여 신고 후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편법증여 혐의자

사례 ④ 부담부 증여 후 아파트 임대보증금 면제로 편법 증여

- ◆ 자녀가 父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시가○○억원)를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서 ○억원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 父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ㅇ억원을 받아 해당 금융채무를 상환하였으며,
- 그 후 자녀가 해당 아파트에 입주(부친은 퇴거)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인 父에게 상환해야함에 도, 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
- 주택을 증여받은 연소자 중 뚜렷한 자금원천 없이 증여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 담하고 있어 주택보유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사례 ⑤ │ 고가 아파트 증여 이후 증여세, 취득세 등 편법 증여

- ◆ 대학생인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父로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시가○○억원)를 증여받고 증여세, 취득세 등 ○억원을 납부하였으나,
 - 자녀는 고액의 주택 유지비용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할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父로부터 관 련 비용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5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취득', '증여' 및 '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 니다.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의 합 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 주택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채무를 활용한 부담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 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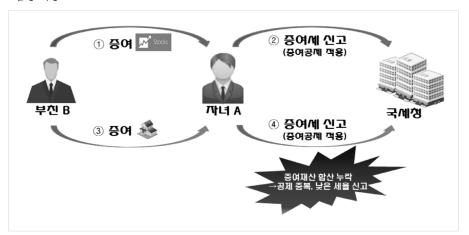
붙임 1 세무검증 주요 추징사례

사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 중복 적용하 1-1 여 증여세 과소신고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B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검증내용



-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에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 한 후 수정신고를 안내한 결과, 자녀 A는 수정신고로 증여세 ○억원 추가 납부
 - * (재차증여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합산

● 조치사항

○ 증여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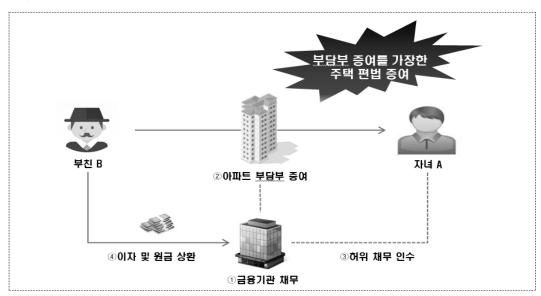
사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부 증여를 가장하여 부친으로부터 주택 편법 1-2 중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B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검증내용



- 자녀 A가 부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친의 금융채 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 이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부친 B가 계속 상환한 사실 확인

- 자녀 A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실제 인수하지 않은 허위 채무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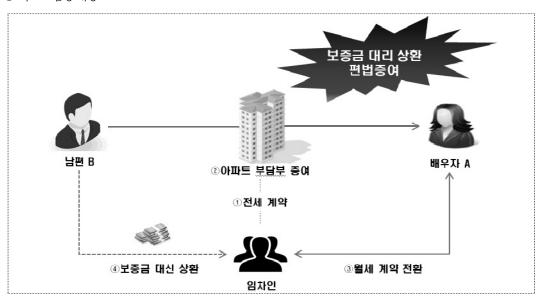
사례 부담부 증여를 통해 주택을 증여받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남편이 1-3 대리 상환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남편 B

○ 수증자 : 배우자 A

● 주요 검증내용



- 30대 주부 A가 남편 B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 증금 ○억원을 승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 이후 임대차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남편 B가 대리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정신고 안내

● 조치사항

○ 남편 B가 대신 상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가 납부

붙임 2

세무검증 주요 선정사례

사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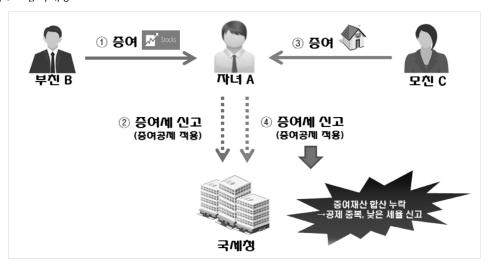
아파트 증여 신고 시 과거 주식 증여재산 합산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B, C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혐의내용



-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00주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 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확인
 - * (재차증여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父母 포함)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합산

● 향후 계획

ㅇ 증여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검증 예정

사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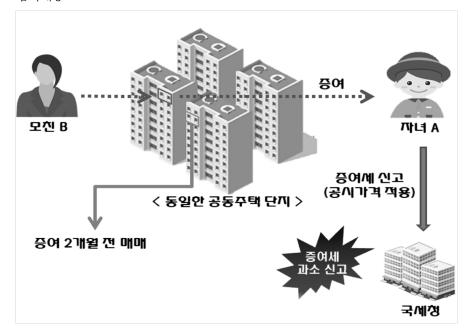
유사매매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증여 과소신고

● 인적사항

○ 증여자 : 모친 B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혐의내용



- 자녀 A는 모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 증여재산은 시가(時價) 평가가 원칙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 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여
 -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 확인

● 향후 계획

ㅇ 증여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검증 예정

사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부친이 매출누락 등 법인 자금유출을 통해 주택 및 아파트 2-3 분양권을 편법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B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혐의내용



- 사회초년생인 자녀 A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부친 B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으나.
 - 부친 B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당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

● 향후 계획

○ 부친 B가 운영중인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친 B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 예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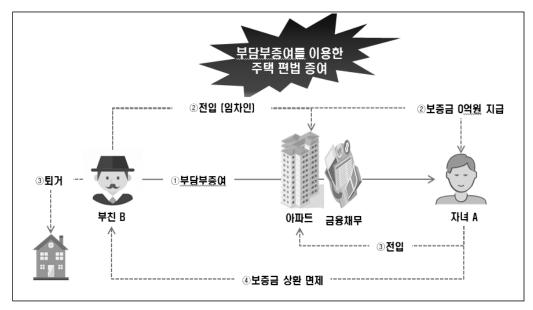
사례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여 주택을 증여받고 부친이 임대보증금을 면제하는 방 2-4 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B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혐의내용



-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시가 ○○억원)를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서 ○억원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 부친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억원을 받아 금융채무를 상화하였으며,
 - 그 후 자녀 A가 해당 아파트에 입주(부친은 퇴거)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인 부친 B에게 상황해야 함에도, 이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향후 계획

○ 자녀 A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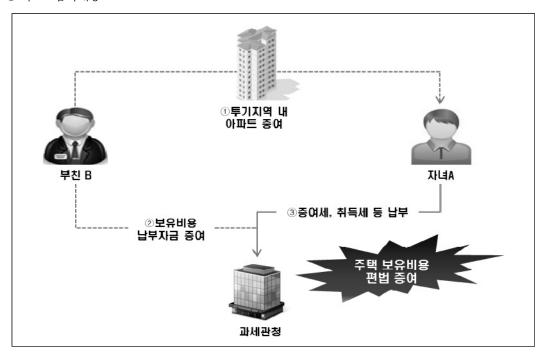
사례 2-5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고액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B

○ 수증자 : 자녀 A

● 주요 혐의내용



- 대학생 자녀 A가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 B로부터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시가○○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억원을 납부하였으나,
 - 자녀 A는 고액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 보유비용을 납부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친 B로부터 관련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 향후 계획

○ 자녀 A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예정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

- 금융위원회**, 2021**. 2

1 추진 배경

- □ 외부감사법령에서는 기업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사 등의 (외부)감 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2명), 채권 금 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
 -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라는 취지

〈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 절차 〉

-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
-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 → <u>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하</u>에 감사가 선정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금융회사
- □ 그간 현장에서 중소기업 등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주주위원 선임) 주주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예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주주 위원 2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 ② (채권 금융회사 위원 선임) 채권 금융회사 위원으로 2명을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금융기관의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예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채권 금융기관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 격요건 때문에 거래하는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할 수 없었음
- □ 이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2 금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 □ (개정내용)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였습니다.
 - 그 외, 기관투자자 위원과 동일하게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1명), 채권 금융 회사 임직원(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
- □ (적용시기) 이번 개정사항은 '21년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외부감사법 제10조제1항)
 - 이에, 금년 감사인 선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 □ (기대효과) 중소기업 등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J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 2021. 1

ᅵ. 개요

-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금년 상반기에 K-IFRS 질의회신 내역 12건('16~'19년 질의 건)을 사례화하여 공개한 데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29건('11~'15년 질의 건)을 추가로 공개*
 -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과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20.5월)에서 매년 연간 질 의회신을 사례화하여 공개(과거 10년치 포함)하겠다고 발표
- □ 그간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K-IFRS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IFRS 질의회신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회신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공

Ⅱ. K-IFRS 필의회신 사례 내용

- □ 금번 공개사례는 금감원에서 회신한 '11년~'15년 K-IFRS 질의회신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 금융상품 13건주1), 주식기준보상 3건주2), 공정가치 측정 3건주3), 연결재무제표 3건주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주5) 등 총 29건을 공개
 - 각 건은 ●현황, ❷질의사항, ❸회신내용, ④판단근거로 구성되고, 이용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
 - 주 1)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등
 - 2)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등
 - 3)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등
 - 4)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등
 - 5)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등

사례1 (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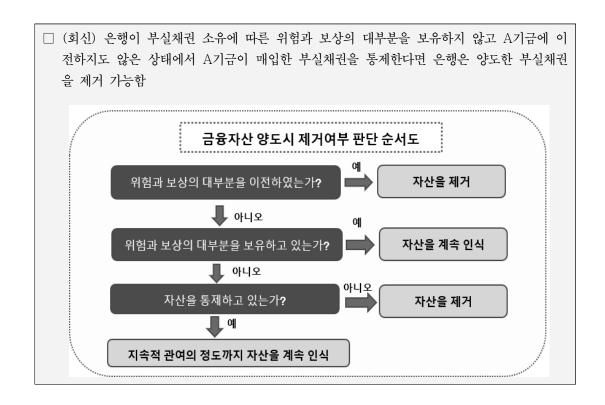
- □ (현황)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61%)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
-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 하였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 □ (질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 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 □ (회신)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사례2 (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 □ (현황) 은행이 A기금과 체결한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A기금에게 양도하였으나,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은행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는 A기금의 고유권한으로 부실채권을 양도한 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음
- □ (질의)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Ⅲ. 향후 계획

- □ K-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

붙임1

'20년 하반기 공개대상 K-IFRS 질의회신 목록

구분	질의회신 공개번호	제목	회신일
1	2020-FSSQA13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11. 3. 4.
2	2020-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11. 3. 4.
3	2020-FSSQA15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11. 8. 17.
4	2020-FSSQA16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11. 9. 28.
5	2020-FSSQA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11. 11. 18.
6	2020-FSSQA18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12. 1. 5.
7	2020-FSSQA19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12. 1. 13.
8	2020-FSSQA20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 리	'12. 5. 8.
9	2020-FSSQA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12. 5. 9.
10	2020-FSSQA22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 의 측정시점 관련	'12. 5. 10.
11	2020-FSSQA23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3. 3. 19.
12	2020-FSSQA24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13. 3. 26.
13	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13. 4. 19.
14	2020-FSSQA26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13. 4. 29.
15	2020-FSSQA2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13. 5. 13.
16	2020-FSSQA28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13. 6. 7.
17	2020-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 점 관련	'13.7.17.
18	2020-FSSQA30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13. 7. 22.
19	2020-FSSQA31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13. 7. 25.
20	2020-FSSQA3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 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13. 9. 4.
21	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 련 회계처리	'13. 11. 12.
22	2020-FSSQA34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14. 1. 29.
23	2020-FSSQA35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14. 2. 11.
24	2020-FSSQA36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14. 4. 25.
25	2020-FSSQA37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14. 5. 29.
26	2020-FSSQA38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14. 6. 19.
27	2020-FSSQA39	3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28	2020-FSSQA40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15. 6. 22.
29	2020-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15. 11. 10.

붙임2

K-IFRS 질의회신 사례 예시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 또한, 舊K-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 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 사가 소유하는 손자회사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 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 (K-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IFRS 1110.25)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 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 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 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실되는 것은 아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 금융감독원, 2021. 2

1. 개요

-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 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 ('23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적용 사례를 마련하여 배포
-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Working Group(외부감사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20.10월~'21.1월)를 통해 적용사례를 마련
- □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동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 확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

Ⅱ. 적용 시례의 주요 내용

- □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19년에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 례 36건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

(네쿠와게펀디제도 감시의 구표 영목)					
주요 항목	′19년 발표	′21년 발표	기존 사례수정		
감사계획, 범위 결정	4건				
전사적 수준 통제	4건				
통제 테스트	7건	3건	1건		
IT 관련		4건			
경영진 검토 통제 등	4건				
통제 이탈 및 미비점 평가	3건	5건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9건		1건		
감사보고서 발행		7건			
기타	5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주요 항목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

36건 19건 2건

적용 사례 예시

합 계

- ◈ (통제 미비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영진이 자산손 상 기준서 적용 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가 향후 변경된 경우 내부회계관 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 현재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하였고 그 결과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 범위 이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감사인은 회사가 통제를 운영한 결과 회계추정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였는지, 이를 충분히 공시하였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Ⅲ. 향후 계획

-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할 예정(1.29일)이며
 -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개요 〉

- 상장법인은 新외감법 시행으로 '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는
 - (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 ➡ 3단계로 진행됨

①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문고서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독립적평가 및 결과 문서화) ③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2019년부터 내부회계 감사의견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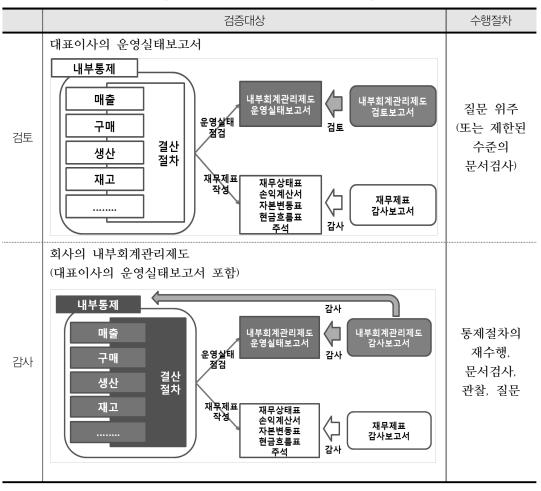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 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 감사의무화 시점 : '19회계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 '23년(1천억원미만)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 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 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 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1. 2

-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 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 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21.1.11.)
 - □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하였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회계오류라 판단하지 않음
 - ① 미래현금호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가 아님
 - ② 할인율 추정시 비합리적 시장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범위 제시
- □ 그러나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 및 감독지침 적용에 일부 애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 * 상장협, 코스닥협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

현장의 목소리

- ① (감사인의 보수적 접근) 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을 제시하여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 * 예) 외부수치자료(국제산업협회 수치자료) 인용 등
- ② (과거 관행의 적용)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을 적용한 잣대로 외부 감사 수행
- ③ (추정근거 제시 어려움)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나,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 에 한계 존재
 - * 예) 코로나19 이후 매출 등의 회복가능성 및 회복시기 추정
- → 이에, 감독당국은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후 추가사항을 안내합니다.

2 후속지침안의 주요내용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회계추정 포함)에 대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6)
- [2]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 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습니 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금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 (향후계획)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